

1. 개정이유

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 통지의무를 확대하여 내국인의 사후 신청기한 준수 여부 등 시설인정 심의신청 내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내국인이 신청한 사실과 그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3. 31. ~ 4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회의 결과의 통지)”를 “(회의 결과 등의 통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고, 해당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<u>회의 결과의 통지</u>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<u>회의 결과 등의 통지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고, 해당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